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13.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경제지원과장)
- 발의일자: 2024. 2. 28.(수)
- 회부일자: 2024. 2. 28.(수)
- 검토기간: 2024. 2. 28.(수) ~ 3. 6.(수)

2. 제안이유

- 우리구는 2020년 11월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증진과 마을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시설 내 수직형 식물농장인 달서 상인스마트팜을 2024년 6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차세대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달서 상인스마트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면적, m ²)	주요시설	운영인력	비 고
달서 상인스마트팜	상인동 1579 (상인3동)	445.96 (지상4층)	재배실, 작업포장실, 홍보 및 체험실, 유통유통리터실, 사무실 등	상근 2명 기간제 7명 (파트타임)	

※운영비: 연 230,000천원 정도(구비)

- 인건비(127백만원): 상근 2명, 기간제 7명

- 운영비(103백만원): 사무관리비, 홍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 스마트팜 시설·운영 관리 전반
- 업체류 재배 관리, 수확, 상품화, 판로개척 및 유통망 확보
- 스마트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팜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협력을 통한 시설 홍보
- 그 밖에 스마트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2024. 6. 1.~2026. 12. 31.(2년 7개월)

※상인3동 복합청사 시설 준공(2024. 5월말) 지연시 순연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5. 검토의견

-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스마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본 동의안은 제출 근거 및 절차 등이 적절하고, 스마트농장의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 령 】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스마트농장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